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120
----------	--------

제출년월일 : 2021.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푸드뱅크마켓 1호점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전문 인력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올리고, 안정적 시설운영
- 사회적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기부문화 확산에 효율적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기부식품 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식품등의기부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및 후원개발,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1) 위치 : 마포구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 내(1층)
- 2) 규모 : 매장 154.70㎡ 및 창고 63.05㎡
- 3)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022.4.1. ~ 2027.3.31.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2년 예산 기준)

- 1) 소요예산 : 195,629천원(시비 78,014천원, 구비 117,615천원)
- 2) 산출근거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195,629		
인건비	143,429	47,810천원 × 3명	연 소요액 시비 71,714천원 구비 71,715천원
운영비	50,600	4,217천원 × 12개월 ※ 관리비, 차량유지비, 공과금, 사업비 등	연 소요액 시비 5,500천원 구비 45,100천원
간판교체비	1,600	간판교체비용	1회성 시비 800천원 구비 8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2)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 기타사항

- 1) 민간위탁 추진일정
 -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 2021. 11월
 -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 2021. 12월 ~ 2022. 2월
 - 협약체결: 2022. 3월
 - 위탁운영: 2022. 4월 ~ 2027. 3월(5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2.8.3, 2019.6.12, 2020.1.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첨부 자료

마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1호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인적·물적 현황

주소	면적	직원현황
마포구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 내 1층	매장 154.70㎡ 및 창고 63.05㎡	3명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2020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계	208,176	208,176	
인건비	131,376	131,376	시비 65,688 구비 65,688
운영비	51,000	51,000	시비 5,700 구비 45,300
차량교체비, 공기청정기구매비	25,800	25,800	시비 12,900 구비 12,900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 적정

- 1) 현 수탁자명 : 재단법인구세군유지재단
- 2) 현 위탁기간 : 2017.4.1.~2022.3.31.
- 3) 운영내용

(2021.10월 기준)

이용자수	이용시설	모금실적	배분실적
1,289명	9개소	585,382천원	630,168천원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점검일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0.11.13	- 기부물품 가액 산정기준 설정 등 권고 2건 - 예산과목 구분 미흡 등 시정 7건	시정 완료 처리

5. 사건·사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성과평가결과서 :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

※ 2021년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2022년으로 연기

1)평가 배경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신설('16.2.3) 및 동법 시행령 개정('17), 보건복지부 고시('18.1.10)에 따라 3년마다 기부 식품등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

2)평가 기간 : 2018. 7월 ~ 9월

3)평가 체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민간위탁

4)평가지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평가지표	배점 (가산점)	
				푸드뱅크	푸드마켓
법적기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6
			독립매장 유무	-	3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6 (1)	6 (1)
			보조인력 활용수준	4 (1)	4 (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 (1)	6 (1)
			직원의 근무여건	5	5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7	7
			FMS 활용도	5	4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 배분의 적절성	7	7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6	6
			기부자(처) 관리수준	5	4
			이용자 관리수준	5	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6
	운영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예산관리 수준				3	3
운영위원회 운영				3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의 적극성	3	3
			사업교류 협력도	3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5	5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5	5
배점 계				100 (103)	100 (103)

5)평가 결과 : 푸드마켓 A등급, 푸드뱅크 B등급

연번	사업장 일반 현황		차량/냉장·냉동·보유 및 관리	보관·창고·보유 및 관리	독립매장유무(푸드마켓만 해당)	전담인력 확보 수준	보조인력 활용 수준	직원의 교육 참여 수준	직원의 근무여건	기부식품등 위생 관리	FMS 활용도	기부식품 등의 배분의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수준	기부자(처) 관리 수준	이용자 관리 수준	행정 문서 및 정보 관리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예산 관리 수준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홍보의 적극성	
	사업장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평가 지표 점수
	뱅크/마켓	사업장 명칭	가중치 7	가중치 6	가중치 3	가중치 6 (+1)	가중치 4 (+1)	가중치 6 (+1)	가중치 5	가중치 7	가중치 5(뱅크) 4(마켓)	가중치 7	가중치 6	가중치 5(뱅크) 4(마켓)	가중치 5(뱅크) 4(마켓)	가중치 6	가중치 3	가중치 3	가중치 3	가중치 3	가중치 3
1	마켓	미포행복나눔푸드마켓 호점	7.00	5.50	3.00	7.00	5.00	7.00	5.00	7.00	4.00	7.00	6.00	4.00	4.00	4.00	2.10	3.00	3.00	3.00	
2	뱅크	미포행복나눔푸드(뱅크)마켓 1호점	7.00	5.50	0.00	6.00	5.00	7.00	5.00	7.00	5.00	5.25	6.00	5.00	3.75	6.00	2.10	3.00	3.00	0.75	

※등급별 평가결과

(단위: 개소(%))

구분	계	등급 구분				
		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70점 이상 80점 미만)	D (60점 이상 70점 미만)	E (60점 미만)
전체	411 (100%)	117 (28.5%)	164 (39.9%)	70 (17%)	27 (6.6%)	33 (8%)
푸드뱅크	288 (100%)	54 (18.8%)	116 (40.3%)	61 (21.2%)	25 (8.7%)	32 (11.1%)
푸드마켓	123 (100%)	63 (51.2%)	48 (39%)	9 (9%)	2 (1.6%)	1 (0.8%)